

미디어센터 규정

□ 제정 : 2020. 3.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수원과학대학교 미디어센터(이하“센터”)라 칭한다.

제2조(목적) 센터는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학정신의 선양을 위하여 학보와 방송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학 내외의 공지사항 등을 알림으로써, 본교 대학인의 교양 및 정서를 함양함과 더불어 본교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수행한다.

1. 학보발행
2. 교내방송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센터에는 발행인, 편집인, 센터장, 간사, 편집장 및 방송부장을 둔다.

1. 발행인 및 편집인은 총장이 되고 센터를 대표한다.
2.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총장의 지휘감독아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3. 간사는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장을 도와 일반업무, 학보발행 및 기자 교육 등을 보좌하며, 방송의 제작, 그리고 방송기기의 유지를 주관한다.
4. 편집장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학보발행 업무를 돕게 한다.
5. 방송부장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학기로 한다.

제 3 장 운 영

제6조(기자) 본교 재학생 중에서 기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총장이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매 학기초에 임명한다.

1. 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학년 1학기(단 3년제학과는 3학년 1학기, 4년제학과는 4학년 1학기)까지를 임기로 하며, 매학기 재임명되어 학보발행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평점 2.5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자로 임명될 수 없으며 기자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나 센터의 명예 및 재산상의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 총장 및 센터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단독으로 또는 센터장의 건의로 해당 기사를 해임한다.
2. 기자들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급된다. 또한 학보발행 업무는 학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보 발행시 및 본교 홍보나 전체 학생의 학업발전과 유관한 취재 시에 발생하는 수업 결손에 대해서는 그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3. 수습기자는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센터장이 주관하는 일정 형식의 전형과 일정 기간 동안 학보편집과 취재 등의 훈련을 받은 후에 기자로 발령된다.
4. 기자 및 수습기자는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학보발행에 관한 취재 및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5. 명예기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2학년 1학기(단 3년제학과는 3학년 1학기, 4년제학과는 4학년 1학기)로 임기가 종료한 기사를 명예기자로 임명하여 기자와 모든 면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할 수 있다.

제7조(방송부원) 본교 재학생 중에서 방송부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총장이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매 학기초에 임명한다. 방송부원은 정부원과 수습부원으로 구분한다.

1. 정부원은, 소정의 연수를 마친 수습부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수습부원은 센터장이 정하는 전형 및 면접을 거쳐 선발되며, 소정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정부원의 방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 정부원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급된다. 또한 방송 관련 업무는 학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교 홍보나 전체학생의 학업발전과 밀접한 방송활동 시 발생하는 수업결손에 대해서는 그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3. 방송부원이 본교 혹은 본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또는 교육방송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임시킬 수 있다. 또한 방송부원의 방송업무 수행 태도가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평점 2.5미만)한 경우에는 방송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방송부원의 담당 방송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해당 방송 경비를 지급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수인계) 선임자와 후임자간의 업무 및 재산의 인수인계는 제2학기 개강 첫 주에 하여야 한다. 단 구성원 및 조직의 변동에 따른 인수인계는 경우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진다.

제9조(논설위원) 센터에 학보발행을 위한 논설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논설위원은 전임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10조(편집회의) 센터에 학보 편집계획 수립을 위하여 편집회의를 둔다. 편집회의는 센터장, 간사, 편집장 및 기자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소집한다.

제 4 장 재 정

제11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 회계로 총당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본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의 회계기준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해산) 본 센터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제 4 장 규정의 개정

제1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